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52

발의연월일: 2022. 6. 15.

발 의 자:정희용·강대식·구자근

김영식 • 박수영 • 배현진

양금희 • 윤영석 • 정우택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을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이르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추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과세 시점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

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그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84조제3호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⑤			
계산할 때 <u>2023년 1월 1일</u> 전	<u>2025년 1월 1일</u>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u>2022년 12월</u>	<u>2024년 12월</u>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31일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u>.</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	3			
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	<u>5천만원</u>			
<u>۴</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정법률 부칙			

제	1조	(시	행일) 0]	법은	203	21년	1
	월	1일	부터	시	행한다	. 디	-만,	다
	음	각	호의	개	정규정	은	각	호
	의	구፥	른에	따른	날부	터	시 행	한
	다.							

- 1. (생략)
-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항제6호다목, 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3. 4. (생략)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저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 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

세1조(시행일)	
1. (현행과 같음)	
2	
	<u>2025년</u>
<u>1월 1일</u>	
3. • 4. (현행과 같음)	
세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 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은 <u>2023년 1월 1일</u> 이후 가상 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u>2023년 1월 1일</u> 이 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 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u> 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00051 10 10
2025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
<u> </u>
<u>.</u>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u>수</u>
②
<u>2</u>
025년 1월 1일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u>2025</u>
<u>년 1월 1일</u>